

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4. 2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4월 1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4월 20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4. 2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직선거법」 강화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표창대상 및 표창장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표창대상에 기관 및 외국인 추가 (안 제2조)
- 표창장 수여대상 구체적 명시 (안 제5조)
 -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
 - 지역사회발전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 양양,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 -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
 -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